

공 사 시 방 서

1. 목 적

본 시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공원 내 각종 시설물(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) 등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 도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 및 도급자 준수사항

가. 범 위: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시설, 기타 부대설비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사항

나.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다. 공사기간은 **2026. 8. 착공일 ~ 2026. 12. 31일까지**로 계약하고 대금 지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달한 설계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하여, 도급자가 기성금 청구 시 분기별 또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합산하여 정산한다.

라. 공사기간 내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준공 처리한다.

마. 도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접수될 경우, 작업내용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[붙임2] 서식에 따라 작업예정일자를 기입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(기상악화, 기타 재해 등)으로 인하여 예정일자에 작업이 어려울 경우,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작업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.

※놀이기구 파손 등으로 인해 긴급보수를 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할 수 있도록 한다.

바.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이 완료될 경우 [붙임3]의 서식에 따라 작업 전중후 사진을 포함하여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.

3. 공사의 시행

가.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발주청이 작업지시한 내용에 따라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공이나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

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.

- 나. 도급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현장임을 고려하여 장비 및 차량 진입 시 교통 통제를 철저히 하고, 이용객들이 많은 주말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(폭우, 폭설 등으로 인해 주중 공사가 어려울 경우)을 제외하고 공사를 지양하도록 한다.
- 다.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 감독공무원에게 당일 작업내용 및 작업량을 이전에 작업계획을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보고 해야한다.
- 라.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인허가, 신고, 검사 등을 시공사가 대행하여야 한다.
- 마. 본 공사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료는 완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검수하여 제품의 사용 유무를 결정한다.
- 바.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, 즉시 반출하고 합격 된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.
- 사. 공사중 도급자는 감독공무원의 허가 없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사 시공방법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.
- 아.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이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와 풍기, 위생 의 단속 및 화재,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.
- 자.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, 공사기간, 발주자명, 공사 수급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차. 공사중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일반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카. 도급자는 보수공사 준공서류 제출 시 착공전, 공사중, 준공사진을 동일장소 배경으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타. 본 공사로 인하여 기물의 손해와 인명피해 등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 책임으로 하고 마땅한 피해보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4. 계약의 해지(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)

- 가.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무단양도 할 경우
- 나.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 : 사망사고 1회, 중상 2회, 경상 3회

- 다.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및 하자로 인하여 대외민원 발생시 : 신문, 잡지, 라디오, TV등 2회
- 라. 긴급 및 야간민원 발생시 연락두절·동원 지체 : 3회
- 마. 공사시정 지시 불이행 : 2회
- 바. 불량자재 사용 : 2회
- 사. 허위공사 적발 : 2회
- 아. 민원처리 지연(단순민원 2일, 그 외 3일) : 5회
- 자. 담당자 지시 불이행 및 준수사항 등 미이행 : 3회
- 차.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수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, 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5. 설계 변경 조건

- 가.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에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.
- 나.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
- 다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

6. 기 타

- 가. 본 지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』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나. 본 지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다. 작업 시 현장을 청결히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라. 작업 중에는 작업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하여 이용 시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마.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수급인이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.
- 바. 동파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동파 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사. 이 과업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- 아.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,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,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,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자.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, 노동조합법, 직업안정법, 재해구조법,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- 차.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, 고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.
- 카. 본 공사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.

[붙임1]

공원 내 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작업지시서

연번	일시	위치	주소	작업내용	수량	비고
예시	2026-08-01	푸름어린이공원	금호동 743-1	시소안장 교체	1개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
첨부: 작업구간 도면(항공사진) 등 필요한 자료

2026년 8월 일

감 독 원 : 감독공무원 (서명)

수령확인 : 현장대리인 (서명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



[붙임2]

공원 내 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작업계획서

연번	지시일자	위치	작업내용	수량	작업예정일자	비고
예시	2026-08-01	푸름어린이공원	시소안장 교체	1개	2026-08-05	손잡이 1개 추가 보수 필요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
2026년 8월 일

현장대리인 : (서명)

감독공무원 : (서명)

업 체 명

(직인날인)

[붙임3]

공원 내 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작업완료보고

연번	위치	작업일자	지시사항		완료보고		비고
			내용	수량	내용	수량	
예시	푸름어린이공원	2026-08-05	시소안장 교체	1개	시소안장 교체 손잡이 교체	1 1	현장 확인에 따른 추가보수 시행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
2026년 8월 일

현장대리인 : (서명)

감독공무원 : (서명)

업 체 명 (직인날인)

[붙임4]

작업완료보고 사진대지

전

중

후